민간자격관리운영세칙

목 차

제1장 총칙 5-6-3
제1조 목적 5-6-3
제2조 적용범위 5-6-3
제3조 정의 5-6-3
제4조 자격검정 구분5-6-4
제4조의2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5-6-4
제5조 자격검정 시행계획5-6-4
제6조 자격검정 공고5-6-4
제2장 시험관리종사자 5-6-4
제7조 시험관리종사자 구분5-6-4
제8조 시험관리종사자의 임무5-6-4
제3장 시험문제관리5-6-5
제9조 출제계획 수립
제10조 출제의뢰5-6-5
제11조 자격검정 과목 등5-6-5
제12조 시험문제카드 보관5-6-5
제13조 시험문제 검토5-6-5
제4장 시험관리5-6-5
제14조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5-6-5
제15조 검증기준5-6-6
제16조 결격사유5-6-6
제17조 세부시행계획 수립5-6-6
제18조 시험문제 선정5-6-6
제19조 시험문제의 편집ㆍ편찬5-6-7
제20조 시험문제지 보관5-6-7
제21조 시험장소 및 준비5-6-7
제22조 시험시간5-6-8
제22조의2 우시자 보인 화인

제23조 답안지 취합 및 문제지 처리5-6-8
제24조 채점 5-6-8
제25조 합격자의 결정5-6-8
제26조 결과통보5-6-8
제5장 교육관리5-6-9
제27조 교육과정의 구분5-6-9
제28조 교통사고분석사교육 <개정 2010.2.4> 5-6-9
제29조 도로안전통제원교육5-6-9
제30조 강사의 구분 및 운용 등5-6-10
제31조 교육관리5-6-10
제32조 생활관 운영5-6-10
제33조 증명서 발급5-6-10
제34조 교육결과보고5-6-10
제35조 퇴교 5-6-11
제6장 민간자격관리위원회 <개정 2010.2.4> 5-6-11
제36조 설치5-6-11
제37조 구성5-6-11
제38조 기능5-6-11
제38조 기능 5-6-11 제39조 소집 및 회의 5-6-11
제39조 소집 및 회의5-6-11
제39조 소집 및 회의 ··································
제39조 소집 및 회의

부	칙	5-6-13
---	---	--------

민간자격관리운영세칙

2008. 7. 2 제정 (규정 제829호) 2008. 9. 5 개정 (규정 제834호) 2009. 1.29 개정 (규정 제847호) 2009. 3.27 개정 (규정 제855호) 2010. 2. 4 개정 (규정 제893호) 법률제11690호, 2013.3.23.(정부조직법 개정) 2017.12.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규정제1160호) 2019.12.18. 개정(규정제125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민간자격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민간자격검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직업능률 향상과 민간자격 취득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4>

-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민간자격(이하 "자격"이라 한다)검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8.9.5., 17.12.4>
- 1. 교통사고분석사
- 2 도로안전통제원 <개정 2019.12.18.>
-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5, 2010.2.4>
- 1. "교통사고분석사"란 교통사고의 근원적인 사고원인(인적요인, 차량적요인, 도로·환경적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교통안전 전문가를 말한다.
- 2. "도로안전통제원"란 도로유지관리를 위해 교통통제 현장의 안전시설 점검, 교통소통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2차사고 예방 및 긴급구호 등 도로 유지관리 작업장 안전을 관 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9 12:18>
- 3. "자격관리자"란 자격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18.>
- 4. "자격검정"이란 자격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 등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9.12.18>

제4조(자격검정 구분) ① 자격검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12.18>

- 1. 선택형 객관식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
- 2. 기술형 주관식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4조의2(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8>

- 1. 교통사고분석사의 직무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적요인, 차량요인, 도로·환경적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판별, 교통사고 재현 등의 사고분석 업무 를 이른다. <개정 2019.12.18>
- 2. 도로안전통제원의 직무는 교통통제 작업장의 위험요인 검토, 안전시설 점검, 근로자 필수 안전요소 확인 등 작업장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이른다. <개정 2019.12.18>
- 제5조(자격검정 시행계획) 자격관리자는 매년 최초 자격검정 시행일 30일 전까지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자격검정 공고) 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을 시행하려면 자격검정 시행일 20일 전까지 시험일정과 응시과목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시험관리종사자

- 제7조(시험관리종사자 구분) ① 시험관리종사자는 총괄책임자, 시험장관리책임자(진행요원), 연금관리책임자, 문제출제·검토·선정위원, 실기시험위원, 진행보조요원, 편집·편찬요원, 감독요원 및 채점위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종사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다만, 문제출제·검토·선정위원은 채점위원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
- ③ 시험관리종사자는 시험과 관련하여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자격관리자는 연금관리책임자, 문제출제·검토·선정위원, 편집·편찬요원, 채점위원 및 감독요원에게는 자격검정업무 시작전에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서 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연금관리책임자는 문제검토·선정위원, 편집·편찬요원 및 채점위원을 일정한 장소에 격리시키고 외부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험관리중사자의 임무) 시험관리종사자의 세부임무는 별표 2와 같고, 감독요원 행동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제3장 시험문제관리

- 제9조(출제계획 수립) ① 자격관리자는 매년 보관중인 시험문제를 검토하여 시험문제 출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과목별 선정문제수 및 해당 연도의 시험횟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제의뢰) ① 자격관리자는 지정된 시험문제 출제위원중에서 과목당 2명 이상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문제수가 소수이거나 지정한 출제위원이 한정되어 2명 이상 위촉이 곤란한 때에는 출제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출제위원에게 별표 4의 문제출제시 유의사항과 별표 5의 자격검정 과목 및 출제기준을 자세히 알려준 후 출제문제를 별지 제3호서식 의 시험문제카드에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 제11조(자격검정 과목 등) 자격검정 과목 및 출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12조(시험문제카드 보관) ① 자격관리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출제위원이 작성한 시험 문제카드를 인수한 후 시험과목별로 분류하여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관리하여 야 한다.
- ② 자격관리자는 출제된 시험문제의 원안 및 보관용 문제지를 매 시험횟수별로 정리하여 문제카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함의 이상유무를 확인 전검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험문제 검토) ① 자격관리자는 시험문제를 검토하려면 검토위원에게 문제검토시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연금관리책임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0.24>
- ② 시험문제를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분류된 문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수정·보완이 가능한 시험문제는 수정·보완
- 2. 수정·보완이 불가능한 시험문제는 페기

제4장 시험관리

- 제14조(용시원서 교부 및 접수) ① 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 응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자에게 응시번호, 시험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②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등 자격검정의 관리 및 운영은 자격관리자가 주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지사에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응시원서, 구비서류, 반송용 봉투(우표를 첨부하고 응시자의 주소를 기재한 봉투를 말한다)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접수기간 내에 도착한 것만 접수한다. <개정 200024>
- **제15조(검증기준)** ① 자격소지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검증기준을 정한다.
- ② 자격소지자별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통사고분석사 자격시험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교통사고 의 근원적인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전문가 수준의 직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한다.
- 2.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시험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도로유지 보수 작업장의 안전시설 점검, 교통소통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2차사고 예방, 긴급 구호 등의 전문가 수준의 직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한다. <본조시설 2019.12.18>
-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29. 2010.2.4>
- 1.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람
- 2. 제44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3. 제48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 제17조(세부시행계획 수립) 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의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세부일정계획
- 2. 응시인원 현황
- 3. 시간대별 시험과목
- 4. 시험관리종사자 명단

- 5. 소요경비 산출내역
- 제18조(시험문제 선정) ① 문제선정위원은 시험문제 선정시 시험문제가 특정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난이도(상·중·하로 구분한다)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통사고분석사 자격검정의 과목별 선정문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5, 2010.2.4>
- 1. 필기시험
- 가. 교통안전관계법규 20개 <개정 2019.12.18.>
- 나. 교통사고조사분석 개론 30개 <개정 2019.12.18.>
- 다. 교통사고조사분석 실무 20개 <개정 2019.12.18.>
- 2. 실기시험 선정문제수는 교통사고조사분석 업무에 대하여 종합·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과목별 2개이상으로 한다.
- ③ 도로안전통제원 자격검정의 과목별 선정문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필기시험
- 가. 교통안전관계법규 15개
- 나. 기초공학 15개
- 다. 도로안전통제 실무 30개
- 라. 사고처리 및 응급구호 10개
- 2. 실기시험 선정문제수는 도로안전통제원 업무에 대하여 종합·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과목별 2개이상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9.12.18.>
- 제19조(시험문제의 편집·편찬) ① 편집·편찬요원은 문제선정위원이 선정한 문제를 보안 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편집·편찬하여야 한다.
- ② 편집·편찬요원은 시험문제의 정답이 특정한 문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유형을 A형, B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편집·편찬요원은 편찬이 끝난 문제지를 과목별·교시별로 지정된 봉투에 넣고 밀 봉한 다음 각 시험장별로 구분하여 합봉·날인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험문제지 보관) 연금관리책임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봉인된 시험문제지를 시험 당일 시험장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의 지사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전에 해당 지사장에게 시험문제지를 이송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사장은 시험 당일 시험장관리책임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한다.
- 제21조(시험장소 및 준비) ① 자격검정은 공단의 시설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험실당 응시인원 배정은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응시자수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진행보조요원은 각종 부착물을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고, 시험용품을 시험실별로 구분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 ④ 시험실별 응시자 좌석배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좌석배열표에 따라야 하며, 시험장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좌석을 지정하여 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다.

제22조(시험시간) ① 필기시험시간과 실기시험시간의 총한은 100분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 ② 시험중 문제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시간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제22조의2(용시자 본인 확인) 시험감독은 수험표와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본조선설 2019.12.18>
- 제23조(답안지 취합 및 문제지 처리) ① 총괄책임자는 시험종료후 각 지역 시험장의 답안 카드를 인수하여 시험관리본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각 지역시험장의 시험장관리책임자는 시험종료후 문제지를 거두어들여 태우거나 분쇄 등의 방법으로 없애버려야 한다.
- 제24조(채점) ① 필기시험 채점은 광학기호(O.M.R카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고장 등으로 전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채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2명 이상이 채점하여야 하고 감독요원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실기시험 채점은 2명 이상의 실기시험위원이 별표6의 채점기준에 따라 수작업으로 채점하고 감독요원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채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독이 거부된 답안카드에 대하여는 "0"점 처리한다. 다만, 수험번호 및 과목코드를 오기·미기재한 답안카드는 전산기로 보정하여 채점한다.
- 1. 컴퓨터용 싸인펜으로 답안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2. 답안카드를 훼손한 경우
- ④ 자격관리자는 채점이 완료된 답안지는 쇄정장치된 보관함에 1년간 보관·관리하여 야 한다.
- 제25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전 과목 총점의 합의 6할 이상을 받은 사람

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9.12.18.>

제26조(결과통보) 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실시 결과 및 자격검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합격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0.2.4>

제5장 교육관리

- 제27조(교육과정의 구분) 자격관리자는 자격검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 1. 교통사고분석사교육
- 2. 도로안전통제원교육 <개정 2019.12.18.>
- **제28조(교통사고분석사교육)** ① 교통사고분석사교육의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에 대하여는 제6조와 같이 한다. <개정 2019.12.18.>
- ② 교통사고분석사 교육기간은 9일로하고 교육시간은 65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은 별표 7 와 같다. 다만, 야간교육인 경우에는 4주로 한다. <개정 2019.12.18.>
- ③ 자격검정은 제2항에 따라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12.18 >
- ④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는 5지선택형 필기시험 120문제와 실기시험으로 실시하다. 이 경우 필기시험은 7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 ⑤ 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 결과 총점의 6할 이상을 받은 사람은 교통사고분석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8.>
- ⑥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 시행하는 교통사고분석사교육 중 1회에 한하여 교육에 출석하여 수강하지 아니한 교육과목의 전부를 수강함으로써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목이 변경되어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때에는 개설된 과목 중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 ⑦ 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 결과 총점의 6할 이상을 받지 못하여 불합격된 사람은 그 후에 시행되는 자격검정 중 1회에 한하여 총점의 6할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분석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8.>
- ⑧ 교육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18> [본조 삭제<2009.3.27>], <본조 개정 2010.24>
- 제29조(도로안전통제원교육) ① 도로안전통제원교육의 시행계획수립 및 공고에 대하여는 제6조와 같이 한다.
- ② 도로안전통제원교육의 기간은 4일로 하고 교육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교육과목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야간교육인 경우에는 8일로 한다.

- ③ 자격검정은 제2항에 따라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는 5지선택형 필기시험 70문제와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필기시험 은 7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 결과 총점의 6할 이상을 받은 사람을 도로안전통제원 자격검정에 합격하 것으로 보다
- ⑥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에 시행하는 2회의 도로안전통제원교육 중 1회에 한하여 교육에 출석하여 수강하지 아니한 교육과목의 전부를 수강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목이 변경되어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때에는 개설된 과목 중 자격관리자가 정하는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 결과 총점의 6할 이상을 받지 못하여 불합격된 사람은 그 후에 시행되는 자격검정 중 1회에 한하여 총점의 6할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도로안전통제원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⑧ 교육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8.>
- 제30조(강사의 구분 및 운용 등) ①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전임강사 : 공단의 전문직 직원
- 2. 내부강사 : 공단의 전문직 직원을 제외한 임직원
- 3. 외래강사 :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외부의 강사
- ② 강의는 전임강사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목의 특성이나 전임 가사 수급사정 등에 따라 내부강사 또는 외래강사를 위촉하여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 제31조(교육관리) ① 자격관리자는 지정된 일시까지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입교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생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 1. 학생장 : 각 교육횟수별 1명
- 2. 반 장 : 교육횟수 중 학급편성이 2개반 이상인 때 각 반에 1명
- ③ 자격관리자는 교육생이 교육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자격관리자는 학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생 학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2조(생활관 운영) 교육생의 편의와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생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생의 생활지도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감을 둘 수 있다.
- 제33조(중명서 발급) ① 자격관리자는 평가시간을 제외한 전체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교육생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제6항과 제29

조제6항에 따른 재수강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18.>

- ② 수료증을 발급받은 자가 분실·훼손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34조(교육결과보고) 자격관리자는 해당 연도의 교육이 모두 종료되면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퇴교)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교 조치할 수 있다.
- 1.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수강하지 아니한 경우
- 2. 교육시행과 관련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 3. 생활과 이용을 심히 문란하게 한 경우

제6장 민간자격관리위원회 <개정 2010.2.4>

- 제36조(설치) 민간자격검정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자격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2.4>
- **제3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두다. <개정 2010.2.4>
- ② 위원장은 민간자격관리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2.4>
- 제3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4>
- 1. 삭제 <2010.2.4>
- 2. 삭제 <2010.2.4>
- 3. 민간자격관리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자격검정시험 출제기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부정행위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민간자격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 제39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안건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0조(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 ①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의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교통안전연구개발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9.12.18.>

제7장 민간자격관리 <개정 2010.2.4>

- 제41조(자격증 등록 및 교부) 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서 등록부에 기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4>
-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대상자가 게시용 자격증서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 호서식의 자격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③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격증명재교부신청서를 자격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서등록부에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제42조(보수교육) ①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능력 유지·발전을 위하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격증별 보수교육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통사고분석사의 보수교육 시간은 14시간 이상으로 한다.
- 2. 운수교통안전진단사의 보수교육 시간은 14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 ② 제1항에 따라 5년이 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자격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 ④ 보수교육의 교육과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3조(자격증대여 금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격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자격의 취소) ① 자격관리자는 제16조제1호의 연령제한을 위반한 사람, 제43조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람,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 ② 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서등록 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5조(자격의 정지) ① 제42조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은 위반행위가 해소될 때까지 그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10.2.4>
- ② 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서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수수료) ① 자격검정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필기시험: 70,000원
 실기시험: 70,000원

3.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 20,000원

② 교육수수료는 자격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3.27., 개정 2019.12.18.>

제47조(교재의 제작·판매) 자격관리자는 강사가 집필한 교재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교재를 제작하여야 하고, 자격검정 응시대상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함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제48조(부정행위자의 처분 등) ①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정행위자연명부에 부정행위 내용을 기록하고 해당 응시자에게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적발시 조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9.12.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교통사고분석사 민간자격 관리운영지침과 운수교통안전진단사 민간자격 관리운영지침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보수교육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보수교육 기간에 관한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4 월 25일 이후 교통사고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9.5>

이 세칙은 2008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9>

이 세칙은 2009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3.27>

이 세칙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2.4>

이 세칙은 201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법률 제14939호(2017.10.24.)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교통 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부 칙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예외) ① 이 세칙 시행 전 2019년에 도로안전통제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9조의 도로안전통제원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 그 후 시행되는 자격검정 중 2회에 한하여 총점의 6할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도로안전통제원 자격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세칙 시행 전 취득한 운수교통안전진단사는 이 세칙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분석사 자격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0.2.4>

시험관리종사자 지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명 칭		기 준		
교기 미	총괄책임자		임원 또는 1급 이상의 직원		
실기시험 시험장관리책임자 (진행요원)		– .	3급 이상의 직원		
	연금관리	l책임자	자격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하급자		
	진행보	조요원	소요인원		
	감독요원		1개 시험실당 2명~4명 (수용인원 40명 기준 : 2명)		
	편집ㆍ편	년 찬 요 원	소요인원		
		필기 시험	소요인원		
	채점 위원	실기	소요인원 (최소 2명이상 복수 채점 후 합산 평균 점수 적용)	※ 자격기준 1. 공단의 전문직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교통사고조사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문제출제 선정		소요인원	3. 대학 및 전문대학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기시험위원		소요인원		

[※] 위 지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격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별표 2]

시험관리종사자 세부임무(제8조 관련)

명 칭	임 무
총괄책임자	○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총괄
시험장 관리책임자 (진행요원)	 ○ 시험당일 연금관리책임자(지사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지사장)로부터 밀봉날인된 문제지 인수 ○ 문제에 대한 의문이 있을 시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것은 조치하고 불 가능한 것은 총괄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 ○ 감독요원 불참자 또는 지참자 발생시 진행요원 대체 및 근무상태 점검 ○ 감독요원 서약서 징구 및 주의사항 시달 ○ 진행요원으로부터 인수한 문제지 및 답안카드 중 문제지는 파기하고 답안카드는 시험실별, 교시별로 정리한 후 밀봉날인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인계 ○ 시험장 별로 시험 시행에 대한 보안 유지
연금 관리책임자	 ○ 문제검토・선정・평가위원 및 교정・편집・인쇄요원을 시험 종료시까지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 연급 ○ 시험관리동내 시험관리종사자 및 외부인 출입 통제・감시 ○ 교실별・보관용・여분용문제 봉투에 대한 최종확인 및 날인 ○ 밀봉날인된 문제지를 시험 당일 시험장관리책임자에게 인계 ○ 인쇄원지 및 교정원지, 인쇄중 발생한 파지의 파기(소각, 분쇄)시 입회 확인 ○ 채점업무에 대한 보안업무 담당 및 수거된 문제지 파기(소각, 분쇄)시 입회 확인 ○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보안업무
편집 • 편찬요원	 ○ 선정된 문제를 정답이 특정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정 편집 · 인쇄 ○ 정서된 문제지의 원고 교정 ○ 교정이 끝난 원고 인쇄 후 오 탈자 확인 ○ 보관용 문제지는 각 과목별 정답이 표기된 원본, 인쇄용 원본, 인쇄 본 원본 각 1매와 교시별 문제지 및 여분용 문제지를 봉투에 넣고

명 칭	임 무
문제출제 · 검토 • 선정위원	밀봉 봉투 봉인이 완료되면 각 시험장별로 내용물을 확인한 후 밀봉 문제지 인쇄 및 파지의 파기 문제출제·검토·선정·평가업무 수행
진행보조요원	 ○ 각종 부착물(시험실배치도, 안내표지, 시험본부 표시 등)의 부착 및 관리 ○ 각종 시험용품(인계 · 인수서, 감독표찰, 스탬프 등) 지급 및 회수 ○ 응시표 재교부 업무 ○ 시험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벨 또는 타종, 필요시 안내방송 실시 ○ 시험실을 순회하면서 응시현황, 문제지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시험장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조치 ○ 시험종료후 문제지, 답안카드를 회수하여 문제지는 파기하고 답안카 드는 시험실별, 교시별로 인계 · 인수서를 기재한 후 밀봉날인하여 시험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문제지, 답안카드 및 시험용품에 대한 인계 · 인수 완료 후 감독수당 지급 ○ 시험본부 및 주변정리
감독요원	 ○ "감독요원 행동절차"에 따라 시험을 진행 ○ 시험 부정행위를 방지, 적발 ○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조치사항 숙지 ○ 시험실의 기물보존과 청결 유지
채점위원	○ 채점을 위한 답안카드 이송 및 보관에 따른 보안유지 ○ 문제지 과기
실기시험위원	○ 응시자 신원확인 및 실기시험 평가업무 수행
실기보조요원	○ 장비 등을 이용한 작업형 실기시험 진행업무 보조

[별표 3]

감독요원 행동절차(제8조 관련)

- 1. 시험실에 도착 즉시 수험자간의 간격을 조정한다.
- 2. 시험시간, 시행분야, 시험과목명, 합격자발표일, 응시현황을 흑판에 기재한다.
- 3. 응시표, 컴퓨터용싸인펜, 신분증 이외의 소지품은 교실 전면에 정리하도록 지시 하며, 컴퓨터용싸인펜을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
- 4. 책상에 부착된 번호표 과목과 응시과목의 일치여부를 수험생에게 확인토록 하고 이상이 있는 자는 부감독요원으로 하여금 시험본부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 5. 부정행위자 처리기준을 설명하고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2년간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부정행위자 적발시 증거품 및 확인서를 징구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답안카드 이면을 참고하여 기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수험번호(응시번호), 유형별, 과목코드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7.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교육이 끝나면 해당자만 남게 한 후 시험개시 5 분전에 답안카드 및 문제지를 배부하여 문제지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며, 이상이 있는 문제지는 교체하여 주고 이상이 없으면 문제지 우측상단에 각 장마다 수험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8. 문제지 배부가 시작되면 수험생의 출입을 통제하고 응시현황(대상, 불참, 현재인 원)을 파악하여 흑판 우측 상단에 기재한다.
- 9. 시험시작을 알리는 벨 또는 타종이 울리면 시험개시를 선언하고 응시자 본인여 부, 답안카드 기재상태 수험번호, 유형, 과목코드를 확인한 후 답안카드 확인란 에 날인하여야 한다.
- 10. 시험중 오·탈자 등은 정오표를 읽어주고 문제의 이상유무에 대한 질문은 피한다. 다만, 추후 확인하여 문제에 이상이 있으면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처리하여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 11. 시험이 종료되면 문제지 및 답안카드를 회수하여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해당 교실별 봉투에 매수를 기재하며, 시험도중에 포기한 수험생의 답안카드도 회수 하여야 한다.
- 12. 문제지·답안카드 및 시험용품의 인계·인수가 끝나면 감독수당을 수령한 후 귀가한다.

[별표 4] <개정 2008.9.5>

문제출제시 유의사항(제10조제2항 관련)

- 1.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공통
- 가. 문제는 과목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고르게 분포시킬 것
- 나. 정답은 개인 주관에 좌우될 수 없고 객관적 타당도가 있을 것
- 다. 다른 문제와 관련되어 해답을 암시하는 것을 피할 것
- 2. 필기시험
- 가. 정답은 객관식 5개의 선택항목 중에서 1개를 고르도록 할 것
- 나. 정답의 위치가 5개의 선택항목에 고르게 분포되게 할 것
- 다. 정상적인 응시자가 1개 문제당 평균 1분 내외에 해답할 수 있는 문제일 것
- 3. 실기시험
- 가. 정상적인 응시자가 정해진 시간내에 풀이할 수 있는 주관식 기술형의 문 제일 것
- 나.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답안의 분량을 제한 할 것
- 단답형
- 몇 줄 또는 몇 글자의 범위 이내로 답안을 작성
- 몇 개의 문제중 몇 개를 선택하여 풀이할 수 있도록 할 것
- 다. 각 문제의 배점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할 것

[별표 5] <개정 2008.9.5, 2009.3.27, 2010.2.4., 2013.3.23., 2019.12.18.>

자격검정 과목 및 출제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1조 관련)

1. 교통사고분석사

시험과목		세부항목	주요내용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법령의 이해 ○ 교통안전시설 관련 규정 ○ 교통사고조사분석 관련 규정
		교통사고원인조사 지침	○ 교통사고원인조사 지침의 이해
	교통안전 관계법규 (30문항)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령의 이해 ○ 교통안전시설 관련 규정 ○ 사고유형별 적용방법
	(00 2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특가법 포함)의 이해 ○ 사고유형별 적용방법
		도로법	○ 도로법의 이해 ○ 도로시설관련 규정
	교통사고조사 분석개론 (30문항)	도로관련 자료	○ 사고현장에 나타난 흔적 해석방법 ○ 도로공학 및 사고현장측정 ○ 사고현황도 작성 ○ 사진촬영 등
필기 시험		자동차관련 자료	○ 자동차의 구조 및 운동 특성 ○ 차량결함 및 손상부위 평가방법 등
		교통공학 관련	○ 운전자 및 보행자 특성 이해 ○ 교통량 및 교통류 특성 이해 ○ 신호운영 등 교통운영방안 이해 ○ 도로 및 안전시설 등의 정의와 기능 이해
		기타사항	○ 인체 손상자료 및 도로환경자료로 부터의 조사분석 등 ○ 기타 교통사고조사분석실무 관련 사항
	교통사고조사 분석실무 (20문항)	속도추정을 위한 기초 역학	○ 자동차 운동역학 및 운동량 등 기초물리 ○ 차대차사고·차대보행자·차량 단독 사고 등의 속도추정 등
		교통사고재현	○ 운동방정식을 이용한 속도추정 및 사고 재현 ○ 운동에너지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속도 추정 및 사고재현 ○ 질량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속도추정 및 사고재현 ○ 벡터를 이용한 속도추정 및 사고재현 ○ 삼각함수를 이용한 속도추정 및 사고 재현 ○ 사고재현 소프트웨어 운영 등
		기타사항	○ 기타 교통사고조사분석실무 관련 사항
	교통사고조사	교통사고조사 분석개론	○ 교통사고조사분석 개론의 이해
실기 시헌	분석 실기 (2문제 이상)	교통사고조사 분석실무	○ 교통사고조사분석 실무
		교통사고조사 분석보고서 작성	○ 케이스형 문제출제

2. 도로안전통제원

시험과목		세부항목	주요내용
	교통안전 관계법규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 포함)	○ 도로교통법령(교통안전시설 포함)의 이해 ○ 사고유형별 적용방법
	(15문항)	도로법	○ 도로법의 이해 ○ 도로시설관련 규정
		교통공학론	○ 운전자 및 보행자 특성 이해 ○ 교통량 및 교통류 특성 이해 ○ 신호운영 등 교통운영방안 이해 ○ 도로 및 안전시설 등의 정의와 기능 이해
	기초공학 (15문항)	교통심리학	○ 교통심리학의 이해 ○ 운전행동 모델 / 교통사고와 운전자 요인 / 위험인지시 운전자 행동변화 등
		자동차공학	○ 자동차의 구조○ 차량 동역학○ 첨단자동차 기술
	도로안전통제	도로안전통제원 임무 관련	○ 도로안전통제원의 임무

			○ 도로안전통제원 복장 ○ 도로안전통제원의 업무절차
		국토부 교통관리기준	○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계획수립 ○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기본사항 ○ 도로 공사구간 교통관리 적용 ○ 도로 공사구간 임시 교통통제시설
실무 (30문항)	고속도로 교통관리기준	○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 ○ 공사장 교통관리 메뉴얼 ○ 공사장 사고사례	
	, ,	작업장 안전관리	○ 건설장비 협착사고 예방대책 ○ 유지보수 위험공종 현장관리방안 ○ 유지보수공사 안전관리 종합대책 ○ 안전사고 발생 및 대응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이론 ○ 위험성평가 예시 ○ 위험성평가 실습	
	사고처리	교통사고 처리 절차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 2차 교통사고 예방
및 응급구호 (10문항)	응급구호	○ 응급구호 개요 ○ 응급처치의 원리와 필요성 ○ 심폐소생술, 자동재세동기 사용법	
		공사장 교통관리 기준	○ 교통관리기준의 개요 - 공사장 관련 용어의 정의
실기 도로안전통제 실무 실기 (2문제 이상)		교통관리구간의 관리	○ 도로 공사구간의 유형 - 도로공사 시행 계획에 따른 교통관리 구간의 이해(주의구간, 변화구간 등)
		근로자 안전관리 평가	○ 작업장 안전관리 - 안전장구, 근로자교육 등 이행사항 평가
		사고발생 처리 및 응급 구호	○ 작업장 사고발생 보고 - 보고사항(국토부, 고용부, 경찰) 등 평가 - 사상자 응급구호 등 사고처리 기준

5-6-21 5-6-22

[별표 6] <개정 2008.9.5., 2009.1.29.,2019.12.18.>

실기시험 채점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교통사고분석사

	배점	세부 평가			
출제구분		작성의 체계성	내용의 충실성	정확도	
교통사고조사분석개론	10	3	3	4	
교통사고원인조사실무	10	3	3	4	
교통사고원인조사분석보고서 작성	10	3	3	4	
계	30	9	9	12	

2. 도로안전통제원

		세부 평가		
출제구분	배점	작성의 체계성	내용의 충실성	정확도
공사장 교통관리기준	8	2	3	3
교통관리구간의 관리	8	2	3	3
근로자 안전관리 평가	8	2	3	3
사고발생 처리 및 응급구호	6	-	3	3
계	30	6	12	12

[별표 7] <신설 2009.1.29, 개정 2010.2.4., 2019.12.18.>

교통사고분석사 교육과목(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과 목 명
기초과정 (이론)	o 교통안전법해설 o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o 도로교통법해설 o 기초물리학 및 속도추정을 위한 기초역학 o 교통안전법령상 사고조사 관련규정, 지침 o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부속시설 o 차량 동력학 및 자동차구조공학 o 교통사고 재현프로그램 운용법
조사분석과정 (이론)	o 도로공학 및 노면흔적이론 o 충돌역학 및 사고현장 측정방법 o 교통심리학(도로설계와 인간요인과의 관계) o 법의학 개론(인체해부학) o 교통사고 D/B활용
재현과정 (이론실습)	o 사고현장 도면작성기법(실습) o 사고현장 차량손상평가 및 흔적해석방법 o 교통사고재현 o 충돌시뮬레이션 모의실험 o 교통사고와 교통시설 결함요인 추론방법
조사평가 (이론실습)	o 사고형태지도 작성방법 o 사고유형 및 원인 분류방법 o 사고도표 작성방법 o 개선시책 선정방법 o 교통사고 조사분석보고서 작성

[별표 8] .<신설 2019.12.18.>

도로안전통제원 교육과목(제29조제2항 관련)

과목명	세부 항목
교통관계 법 규	o 도로교통법 o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가법 포함) o 도로법
기초공학	o 교통공학론(속도와 안전, 도로/교통안전시설물) o 교통심리학(교통사고와 인간심리와의 관계) o 자동차공학(자동차의 구조 및 운동특성)
도로안전통제 실무	o 도로안전통제원의 임무와 역할 o 국토교통부 교통관리기준 o 고속도로 교통관리기준 o 작업장 안전관리 o 위험성 평가
사고처리 및 응급구호	o 교통사고 처리 절차 o 응급구호(교통/안전사고 부상자 응급조치 요령)

[별표 9] <개정 2010.2.4., 2019.12.18.>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적발시 조치사항(제48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부정행위자의 기 준	 ○ 수험중에 다른 수험자와 대화를 하는 사람 ○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사람 ○ 수험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답안지를 작성한 사람 ○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한 사람 ○ 수험 중에 물건을 주고 받는 사람 ○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카드를 작성한 사람 ○ 사전에 문제를 알고 시험에 응시한 사람 ○ 대리시험 응시자 및 응시하게 한 사람 ○ 수험자가 시험시간 중에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달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화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하는 사람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부정행위자 적발시 조치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을 중지시키고 수험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요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기록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의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 감독요원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2.4., 2017.12.4>

서 약 서(제7조제4항 관련)

본인은 ______자격시험 문제를 출제 및 채점(선정, 검토, 편집·편찬, 보안)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출제위원(선정, 검토, 편집·편찬, 채점, 보안, 기타)임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2. 출제(선정, 검토, 편집·편찬, 채점, 보안, 기타) 문제에 대하여는 강독하지 않는다.
- 3. 출제(선정, 검토, 편집·편찬, 채점, 보안, 기타) 문제를 복사,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주민등록번호: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하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2.4>

감 독 요 원 서 약 서(제7조제4항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응시원서 접수증과 응시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대리응시자 여부를 확인한다.
- 2. 응시자 상호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한다.
- 3. 응시자에게 공평·친절하게 대하고 고의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한다.
- 4. 기타 감독요원 근무요령에 따라 시간적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행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2.4>

(앞면)

시험문제 카드(제10조제2항 관련)

카드일련번호 :	한 국 교 통 출 제 ¹	안 전 공 단 년 월 일 :
과목 :	①난이도 : 상 중 하	②출제위원 : (서명,날인)
③문 :		
④출제근거 :		⑤답란: ()

(뒷면)

,	시 험 일	자 및	검 토	⑥ 계산문제 풀이
회수	시험일자	검토일자	검토자	
				정 답 해 설

194mm×136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4>

(앞면)

		자	·격검정(핕	길기시험	• 실기	시험)	응시원서	(제14조제1항 관련)		
본인은	년.	도제 회_		_자격검정(필	길기시험 •	실기시험)여	에 응시하	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フ	기재기	사항은 사실	과 다름이	없으며 만역	약 자격검	성 합격	후에 허	위 또는 부실기재 사실이		
발견되?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실 응시	자		(서도	병 또는 인)		
	통안	전공단이사 [.]	장 귀하							
①성 '	명			②주민등	록번호			~		
③주 :	소	우편번호(주 소	-)			전화번호	:		
④최종학	력	년	월 일		학교	š	과 졸업/	'수료/재학		
⑤최근경학	려	년 4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L789		년 4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⑥응시과목		□ 필기시험(응시과목 직접 기재)								
(0) 궁시 ⁴	Ť	□ 실기시학	험(응시과목	직접 기자	1)					
⑦면제근	거	□ 경력소지	□ 대학(다	학원포함 등	에서 해당	라목이수	□ 자격:	소지 🗌 기타		
⑧시험일/	시	필기시험	일시				장소			
및 장:	소	실기시험	일시				장소			
9접 수 <i>></i>	₹ *		'					증명서 □자격증사본		
⑩응시번호	₹*				T 10-	구비서류	□교육· □기타	훈련이수증사본		
					-1 -1 -1.					
	•••••		•••••	<	설취선>					
접수처	*					웅	시	丑		
응시번호	*				.,	회 철 □	실기시험	자격시험		
성 명				주민등			- I I I			
I	년	월	일	र	한국교 [.]	통안전공	공단 이	사장		

※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뒷면)

기 재 요 령

- 1. *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2.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써야 합니다.
- 3. ③항의 주소는 거주지를 한글로 표기하되, 번지, 통반, 우편번호까지 써야 합니다.
- 4. ⑥, ⑦, ⑪항은 해당란에 O표를 하여야 합니다.
- 5.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6. 일단 제출된 응시원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 3. 시험실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싸인펜 등) 및 계산기 이외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 4. 시험시작 30분전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수성싸인펜 한가지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외에 기입하거나 방선 기타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됩니다(주관식의 경우는 기타 필기도구 사용 가능).
- 6.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장 내에서는 흡연, 시험관련 담화, 물품대여 등을 일체 금합니다.
- 7. 부정행위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부정행위자는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시험실 수험자 좌석배열표(제21조제4항 관련)

			감독요원 감독요원		(1) (1)			
				īZ	단			

총원	명	과 목 분 야	
불참	명		
2.0	0		
응시	명		
87	58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0.2.4>

[별지 제7호서식]

학 적 부(제31조제4항 관련)

1. 인적사항

* &] 명	남・여	*주	민등록번호	-	
]주지				자택전화	
주	소				이동전화	
ŏ	부 력	학교		전공	E-mail	
근무처	명칭	소속	부서		직위(직책)	
처	주소	·			근무처전화	

^{*} 표는 필수기재항목임

2. 교육이수현황

가. 수료 교육명 :

교 육 기 간	수 료 여 부	합 격 여 부
~		
~		
~		

나. 보수교육

교 육 기 간	수 료 여 부	비 고
~		
~		
~		
~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8호서식](제33조제1항 관련) <개정 2010.2.4., 2017.12.4>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육과정명 :

교육 기간: (시간)

위 사람은 상기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인)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9호서식]

수료증 발급대장(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명 :

일련 번호	교육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비고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2.4>

제 차 민간자격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제40조제1항 관련)

- 1. 회 의 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참 석 인 원
- 5. 심의 사항
- 6. 주요토의내용
- 7. 참석자 서명

구		분	성	1	명)	너	뗭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1호서식]

서 면 결 의 서(제40조제1항 관련)

안 건:

상기 안건에 대하여 민간자격관리운영세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하고자 하니 검토 후 동의 여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의 견 (찬·반)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2호횡서식]

자격증서 등록부(제41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제2항, 제45조제2항관련)

연번 성명	주민등록	주민등록 번 호	_		취득	갱신	보수	재고	고부	자격	취소	자?	격정지	
연번	성명		번 호	번 호	주	소	일	등록 일	교육 일	일자	사유	일자	사유	기간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9.5., 2017.12.4., 2019.12.18..>

(전면)

교통사고분석사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증

교통사고분석사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증 자 격 번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바탕 : 공단로고) 주 소 : 유 효 기 간 : 교통사고분석사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공단로고)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인)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후면)

기재사항변경	확 인
	기재사항변경

- 1. 보수교육은 유효기간내에 받으셔야야 합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부정한 니다.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소됩니다.
- 2 보수교육을 유효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자 격이 정지됩니다.

1. 규격 및 재질 : 8.5cm × 5.5cm, 폴리염화비닐(PVC)

2. 본문의 색채

가. 전면 : 두문- 연청, 본문 -원청

나. 후면 : 회색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9.5., 2017.12.4., 2019.12.18.>

교통사고분석사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증서 자격 번호: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유효기간: 사진(3*4cm) 귀하는 「자격기본법」 제15조 및 「민간자격관리운영세칙」에 따른 교통사고분 석사 (도로안전통제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210mm × 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별지 제15호서식]<개정 2017.12.4>

기건즈며 :	처리기간						
্ শ্ৰহ্	서 재교부신청서 (저	41 <i> </i> 2^	110상 판단)	7 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증명서번호							
최종합격일자	□□□□년 □□월	□□일					
재 교 부 신청사유	※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민간자격관리원 신청합니다.	-영세칙 제41조제3항: 년 신청인	월	에 의하여 자격증명서 일 서명 또는 날인	를 재교부 받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Ę	구비서류		수 ·	수 료			
	없 음		※ 우편으로 신청하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의함 경우에는 우편요금에 해 를 동봉하여야 합니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부 정 행 위 자 연 명 부(제48조제1항 관련)

연번 성 1	, 명 주민등	주민등록 주 소	부정행위	응시자격	확인							
- L L O O		0	번호 구 또					내 용	부터	까지		

210mm × 297mm 보존용지(2종) 70g/m²